

규약 변경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변경 대상 펀드

NO	펀드명칭
1	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	템플턴 연금저축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3	템플턴 유로피언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4	프랭클린 연금저축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5	프랭클린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6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 변경 사항

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u>5.(추가)</u>	④ <u>5.CLASS S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u>	CLASS S 신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u>5.(추가)</u>	① (생략) <u>5. CLASS S 수익증권</u>	
제39조(보수)	③ <u>5.(추가)</u>	③ <u>5. CLASS S 수익증권</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3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	
제40조(판매수수료)	② (생략) 1.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 이내 2. CLASS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6% 이내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CLASS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 비율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범위를 적용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납입금액의 0.5% 이내로 인하된다.	② (생략) 1.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 이내 2. CLASS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 이내 ③ 선취판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의 원본액으로 구성되지 아니한다.	

	④~⑥(추가)	<p>④ 판매회사는 CLASS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100분의 0.15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CLASS S 수익증권의 후취판매수수료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p> <p>⑥ 제5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5항1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p>	
제41조(환매수수료)	<p>② (생략) [CLASS A 수익증권]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다. [CLASS A-e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p> <p>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p> <p>[CLASS A 수익증권, CLASS A-e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p> <p>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p>	<p>② (생략) [CLASS A 수익증권]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다. [CLASS A-e, CLASS S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p> <p>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p> <p>[CLASS A 수익증권, CLASS A-e, CLASS S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p> <p>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p>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추가)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템플턴 연금저축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3.(추가)	④ 3. CLASS S-P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CLASS S-P 신설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제10조(수익 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u>3. (추가)</u>	① (생략) 3. CLASS S-P 수익증권	
제39조(보수)	③ 2. CLASS C-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4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3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 3. (추가) ④ 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보수율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비율을 적용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연 0.25%로 인하된다.	③ 2. CLASS C-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4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2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 3. CLASS S-P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4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12%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 ④ (삭제)	
<부 칙> 제1조(변경계 약의 시행일)	<u>(추가)</u>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템플턴 유로피언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3조(집합투 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u>5. (추가)</u>	④ 5. CLASS S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CLASS S 신설
제10조(수익 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u>5. (추가)</u>	① (생략) 5. CLASS S 수익증권	
제39조(보수)	③ <u>5. (추가)</u>	③ 5. CLASS S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3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3%	
제40조(판매 수수료)	② (생략) 1.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 이내 2. CLASS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6% 이내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CLASS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 비율은	② (생략) 1.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 이내 2. CLASS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 이내 ③ 선취판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의 원	

	<p>2013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범위를 적용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납입금액의 0.5% 이내로 인한다.</p> <p>④~⑥(추가)</p>	<p>본액으로 구성되지 아니한다.</p> <p>④ 판매회사는 CLASS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100분의 0.15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CLASS S 수익증권의 후취판매수수료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p> <p>⑥ 제5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5항1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p>	
<p>제41조(환매 수수료)</p>	<p>② (생략) [CLASS A, CLASS A-e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CLASS A-e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 1.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없음</p>	<p>② (생략) [CLASS A, CLASS A-e, CLASS S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CLASS A-e, CLASS S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 1.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없음</p>	
<p><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p>	<p>(추가)</p>	<p>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p>	

프랭클린 연금저축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p>④ 3.(추가)</p>	<p>④ 3. CLASS S-P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p>	<p>CLASS S-P 신설</p>

		연금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제10조(수익 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3. (추가)	① (생략) 3. CLASS S-P 수익증권	
제39조(보수)	③ 2. CLASS C-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54%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57%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5% 3. (추가) ④ 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보수율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비율을 적용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연 0.475%로 인하된다.	③ 2. CLASS C-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54%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47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5% 3. CLASS S-P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54%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28%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5% ④ (삭제)	
<부 칙> 제1조(변경계 약의 시행일)	(추가)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프랭클린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3조(집합투 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10.(추가)	④ 10.CLASS S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CLASS S 신설
제10조(수익 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10. (추가)	① (생략) 10. CLASS S 수익증권	
제39조(보수)	③ 10. (추가)	③ 10. CLASS S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7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3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5%	CLASS S 신설
제40조(판매 수수료)	③~⑥(추가)	③ 선취판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의 원 본액으로 구성되지 아니한다. ④ 판매회사는 CLASS S 수익증권의 판 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 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	

		<p>를 취득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100분의 0.15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CLASS S 수익증권의 후취판매수수료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p> <p>⑥ 제5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5항1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p>	
제41조(환매수수료)	<p>② (생략) [CLASS A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3. 90일 이상 : 없음 [CLASS A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 1.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없음</p>	<p>② (생략) [CLASS A, CLASS S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3. 90일 이상 : 없음 [CLASS A, CLASS S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 1.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없음</p>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추가)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명칭(문서 전반)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프랭클린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펀드 명칭 변경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프랭클린 재팬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이 펀드가 투자하는 모펀드 명칭 변경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5.(추가)	④ 5.CLASS S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CLASS S 신설

제10조(수익 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u>5. (추가)</u>	① (생략) <u>5. CLASS S 수익증권</u>	
제22조(신탁 업자의 업무제한 등)	③ (생략) <u>(단서조항 신설)</u>	③ (생략) <u>다만, 해당 증권</u> 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집합 투자기구의 회계감사)	② (생략) <u>(단서조항 신설)</u>	② (생략) <u>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37조(수익 자총회)	<p>⑥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 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 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 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 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u>4분의 1</u> 이 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p> <p>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 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 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p>	<p>⑥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 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u>4 분의 1</u>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 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 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 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u>5분의 1</u>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p> <p>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 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 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 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 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u></p> <p><u>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 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p> <p><u>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 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u></p> <p><u>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 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 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u></p> <p><u>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 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 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u></p> <p>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3 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u>제6항 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u></p>	개정 자본시장 법 및 시행령 반영

	<p>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u>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u></p> <p>⑨ <u>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u></p>	<p>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⑨ <u>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u></p>	
<p>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p>	<p>① <u>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u></p>	<p>① <u>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u></p> <p>1. <u>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2. <u>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제39조(보수)</p>	<p>③ <u>5. (추가)</u></p>	<p>③ <u>5. CLASS S 수익증권</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3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p>	<p>CLASS S 신설</p>
<p>제40조(판매수수료)</p>	<p>② (생략) 1.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 이내</p>	<p>② (생략) 1.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 이내</p>	

	<p>2. CLASS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6% 이내</p> <p>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CLASS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 비율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범위를 적용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납입금액의 0.5% 이내로 인한다.</p> <p>④~⑥(추가)</p>	<p>2. CLASS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 이내</p> <p>③ 선취판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의 원본액으로 구성되지 아니한다.</p> <p>④ 판매회사는 CLASS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100분의 0.15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CLASS S 수익증권의 후취판매수수료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p> <p>⑥ 제5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5항1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p>	
<p>제41조(환매수수료)</p>	<p>② (생략) [CLASS A 수익증권]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다. [CLASS A-e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수익증권, CLASS A-e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p>	<p>② (생략) [CLASS A 수익증권]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다. [CLASS A-e, CLASS S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일 이상 : 없음 [CLASS A 수익증권, CLASS A-e, CLASS S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p>	
<p>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p>	<p>①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서조항 신설)</p>	<p>①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p>	<p>② (생략) 1~5. (생략) (추가)</p>	<p>② (생략) 1~5. (생략) 6. 법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p>	<p>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p>

		<u>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u>	
제47조(투자 신탁의 합병)	② (생략) <u>(단서조항 신설)</u>	② (생략) <u>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 (생략)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 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생략) ⑤ (생략) 1.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자산운용보 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 으로 표시한 경우 ⑥ (생략) <u>제5항 단서의</u>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략) 투자설명서, <u>간이투자설명서</u> 및 <u>증권발행실적보고서</u>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u>간이투자설명서</u> 의 경우 (생략) ⑤ (생략) 1.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자산운용보 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 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 으로 표시한 경 우 ⑥ (생략) <u>다음</u>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u>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 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u> 2. 투자자가 <u>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u>	
<부 칙> 제1조(변경계 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u>	

3. 효력 발생일

2014년 3월 14일

자세한 내용은 변경된 규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